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1가단1307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12,835,98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35,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장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10. 12. 28.경 D은행으로부터 400만 원(대출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을 대출만료일인 2013. 12. 27.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경 D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2016. 3. 16.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의 원금은 3,930,152원, 인수이자 3,150,582원, 인수 후 이자는 2,547,599원이고(합계 9,628,333원), 지연이율은 연 20%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6가소17564), 2016. 5.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628,333원 및 그 중 3,930,152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 8. 23. 기준 위 대출거래약정상 원금은 3,930,152원이고, 이자는 8,905,831원(2016. 3. 17.부터 2021. 8. 23.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 15%의 이율에 따른 이자이다)이다(합계 12,835,983원).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E가 소유하던 것으로 E가 사망하자, 2018. 7. 3. 피고 앞으로 2018.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과 피고는 E의 아들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3. 3. 27. E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F은행인 채권최고액 14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2013. 5.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8. 8. 16.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2018. 8. 16.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22. 10. 13.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12,385,365원(원금 112,229,474원, 이자 155,891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9. 6. 17.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자 G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4. 28.

근저당권자가 H인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당시인 2018. 5.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39,000,000원이고, C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39,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12,385,365원을 뺀

26,614,635원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 C이

채무초과상태인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의분할이 사행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12,835,983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 중 위에서 본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기능하는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8. 5. 18.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은

12,835,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2,835,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부분을 가액배상 부분으로 선행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가액배상 이행의무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역시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별지